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17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 8. 8. 접수 제34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수정

부동산 목록

경기도 이천시 D건물 E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F

일반목구조 판넬위성글마감지붕 지상1층 단독주택 78.63㎡ 중 1/5 지분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은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 B은 위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채행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G 주식회사는 2015. 5. 27. 소외 C에게 금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금만료일 2020. 5. 27., 이자율 연 34.894%, 연체이자율 연 34.894%로 각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G는 2017. 7. 12. 소외 H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H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한편 위 H는 위 채권에 대하여 C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7가소7038849), 2017. 11. 9. 원고 승소의 재판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17,542,182원 및 그 중 금 2,824,709원에 대하여는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외 C은 2014. 6. 4. 소외 I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I는 2016. 8. 31.¹⁾ 소외 J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J는 2017. 7. 7.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1) I는 2006. 1. 27. J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적 계약으로 정한 이래, 현재까지 위 계약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자산양수도계약서 3쪽 제2-1항 참조).

이후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C 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8가소599462), 2019. 5. 17. 원고 승소의 재판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C 은 원고에게 금 2,463,274원 및 그 중 금 1,003,032원에 대하여는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3) 그러므로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 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20,005,456원(= 17,542,182원 + 2,463,274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 (1) 소의 C 은 2019. 7.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2) 대법원은 '매매행위의 사해성' 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점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배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채무자인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 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C의 2019. 7. 26.자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위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D 토지 중 채무자인 소외 C 소유인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K 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2018. 1. 9.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갑 제9호증의 1 등기사 항원부증명서 갑구 8번 참조).

(3)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소외 C 사이의 2019. 7. 26.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동기소 2019. 8. 8. 접수 제3490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